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 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조정(안 제37조의제1항, 제3항)
- 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제44조의2)이 신설됨('21.12.25.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안 제11조의제1항 제3호)
- 라.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평정점 조정을 규정(안 제17조)
- 마.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규정(안 제42조)
- 바.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5. ~ 2. 14.)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기간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
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
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
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
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
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
제처분기간
- 1)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
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처분권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2)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28조의4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로서 제4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 각호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해야 한다.

1. 평가대상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2. 평가대상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3명

제37조 제1항 중 ‘3점’을 ‘2점’으로, 제3항 중 박사학위 중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에 대한 평정점 ‘3점’을 ‘2점’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제37조제1항 및 제3항 개정규정은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 조정 시 연구실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44조에 따라 202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 그 가산점의 평정은 제

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력·기간 계산)		제11조(경력·기간 계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기간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		

<신 설>

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
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
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
제처분기간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
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
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
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
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권자가 법 제51조에 따
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
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
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

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
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
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
된 경우

2)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
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
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
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
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
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
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
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
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
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

	<u>정된 경우</u>
제17조(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평정표) ①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생략) ②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제4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3명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료 교사로서 ----- -----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해야 -- -. 1. 평가대상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2. 평가대상자가 15명 이하인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국가교육위원회 참여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491 (02) 2100 - 3347